

1. 개정 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5.4)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 추진

* 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예외적 사용 가능(시행령 제9조)

②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영위하는 경우 보관시설 구비의무 면제(시행령 [별표])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가능 재활용 유형 특정(제9조제1항신설)

○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의 예외적 사용이 가능한 재활용 유형 특정이 필요하여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으로 재활용 유형 특정

* 수산부산물을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의 화학제품으로 제조하는 유형

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변경신고서 개정(서식3, 4, 5 개정)

○ 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수산부산물 운반업자 유형 반영을 위해 관련 서식 개정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5. 30. ~ 6. 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이란 [별표]의 제4호가목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수산물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u><신설></u> ① ~ ⑤ (생략)	제9조(수산물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서“해양수산물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이란 [별표]의 제4호가목을 말한다. ② ~ ⑥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수산부산물 처리업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 리 기 간 30일
------	------	-------------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주소(사업장) (연락처:)	

⑥업종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보관시설을 구비한 경우)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⑦영업대상 물	수산부산물
⑧영업구역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⑨사업장 소재지	
⑩사무실 소재지	

⑪시 설 · 장 비 설 치 내 용

시설 · 장비명	규격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
⑫기술인력 현황			⑬최대 보관량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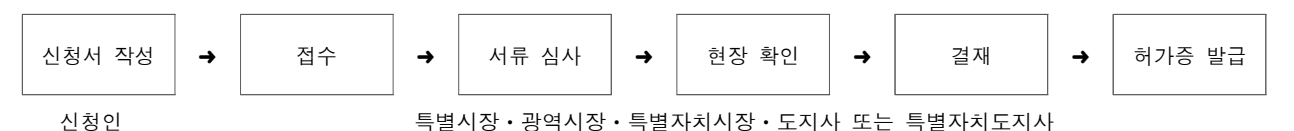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⑥란은 해당 업종을 선택하고,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매립, 해역배출 등의 수산부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시: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고온소각 및 열분해)]
- ⑧란은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 영업구역을 시·군·구 단위로 적습니다.
- ⑨란은 시설 및 장비를 설치 할 장소를 모두 적습니다.
- ⑩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류 및 기술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번호	연월일	위반내용	연월일	처분내용

수산부산물 [] 수집·운반업 [] 중간처리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신고인	①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주소(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⑥수산부산물 처리업 업종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보관시설을 구비한 경우) []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보관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⑦변경사항 유형	[]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관련 [] 사업장 변경 관련 [] 기술인력의 교체 관련
⑧영업대상 수산부산물	
⑨시설 및 장비 현황(종류, 규격, 수량)	
⑩수산부산물 처리 공정	
⑪영업개시일	

⑫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⑬변경사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
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